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,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 위임 조항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(안 제10조)
- 나. 자격요건 선후관계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자격기준 현행화(안 별표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.

별표 1 제2호다목2)의 자격기준란 가) 및 나) 중 “사회복지학”을 “사회복지학, 상담학”으로 하고, 같은 란에 마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

마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
((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6년(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
경우 5년))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같은 목 3)의 구분란에 “임상심리전문가”를 신설하고, 3)의 자격기준란
의 가) 및 나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
나)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
사람

같은 목 4)의 자격기준란의 가) 및 나) 중 “사회복지학”을 “사회복지학, 상담학”으로 하며, 5)의 자격기준란의 가) 중 “「의료법」 제7조”를 “「의료법」”으로,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나) 중 “「의료법」 제7조”를 “「의료법」”으로,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며, 6)의 자격기준란의 가) 중 “사회복지학”을 “사회복지학, 상담학”으로, “취득한 후”를 “취득하고”로, “경력”을 “경력(학사 학위 취득 후의 경력 포함)”으로 하며, 나) 중 “사회복지학”을 “사회복지학, 상담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제10조(권한의 위임)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10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.</u>																
[별표1] 종사자의 자격기준 (제7조 관련) 1. (생략) 2. 개별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<th style="width: 90%;">자격기준</th></tr> <tr> <td>가.(생략)</td><td>1)~3) (생략)</td></tr> <tr> <td>나.(생략)</td><td>1)~5) (생략)</td></tr> <tr> <td>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</td><td> 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</td></tr> </table>	구분	자격기준	가.(생략)	1)~3) (생략)	나.(생략)	1)~5) (생략)	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	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[별표1] 종사자의 자격기준 (제7조 관련) 1. (생략) 2. 개별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<th style="width: 90%;">자격기준</th></tr> <tr> <td>가.(현행과 같음)</td><td>1)~3)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나.(현행과 같음)</td><td>1)~5)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</td><td> 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</td></tr> </table>	구분	자격기준	가.(현행과 같음)	1)~3) (현행과 같음)	나.(현행과 같음)	1)~5) (현행과 같음)	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	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구분	자격기준																
가.(생략)	1)~3) (생략)																
나.(생략)	1)~5) (생략)																
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	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															
구분	자격기준																
가.(현행과 같음)	1)~3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나.(현행과 같음)	1)~5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다.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	1) 가)~나) 생략 2) 부소장 가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
예 근무하는 종사자	다) (생략) 라) (생략) <신설>	근무하는 종사자	다) (현행과 같음) 라) (현행과 같음) 마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(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6년(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5년))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3)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가)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)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	3) 정신건강임상심리사·임상심리전문가 가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)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
	4) 심리치료사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	4) 심리치료사 가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간호사	5) 가)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	간호사	5) 가)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)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

현행			개정안		
		있는 사람			<u>년</u>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6) 상담원	가) 사회복지학, <u>심리학</u> 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<u>경력이</u>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심리학</u> 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	6) 상담원	가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<u>경력(학사 학위 취득 후의 경력 포함)</u> 이 있는 사람 나) 사회복지학, <u>상담학</u> 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비고: (생략)			비고: (현행과 같음)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95